

주요 내용

■ 효과적인 사외이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

□ 국내 사외이사 제도 현황과 정책 방향

- (현행 제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 기업은 전체 이사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
- (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 선진국의 사외이사 제도와 성과 논쟁

- 선진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랜 시간동안 자국의 경영 여건에 적응하면서 형성되었음
-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 제도는 법률적인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자율적·선택적으로 발전해온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도입 취지와 상반된 결과들도 도출되고 있음

□ 정책 제언

- 법제화를 통해 일률적인 사외이사 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여건에 따라 기업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 후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외이사의 비중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사외이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함

효과적인 사외이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 사외이사 제도 현황과 정책 방향

- (현행 사외이사 제도)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전체 이사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외이사 정의: 당해 회사의 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 적용 대상: 모든 株券上場 法人
 - 사외이사 수: 총 이사의 1/4 이상
 - 사외이사 자격: 지분 관계, 경영진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¹⁾
 - 기타: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전체 이사의 1/2(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사외이사가 1/2 이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가 2/3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과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음
 -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 法務部案의 일부 내용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상법,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임

1) 이 조건에 위배되는 사람은 최대 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주요 주주, 주요 주주의 가족,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거나 2년 내에 임직원이었던 사람, 임원의 가족, 특별한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임

<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중 사외이사 관련 내용 >

- ▶ 사외이사 비중 확대
 -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
 -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사외이사 1인 참여
- ▶ 사외이사 책임 제한
 - 고의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행위인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적절한 수준(보수 총액의 5배 정도)으로 제한
-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 법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 “회사 영업에 대한 판단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회사, 그 주요 주주, 이사, 또는 임원과 기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로 독립성 기준 확대
- ▶ 업무 수행 지원
 - 사외이사는 회사 내·외의 법률 전문가, 재무 전문가 또는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음
- ▶ 권한 강화
 - 내부거래에 대해 고유한 승인권 보유

선진국 사외이사 제도와 성과 논쟁: 미국의 경우

- 선진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랜 시간동안 자국의 경영 여건에 적응하면서 형성되었음²⁾
 - (미국)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은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음
 - (독일)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경영이사회(회사 임원)와 감독이사회라는 이중적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감독이사회에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음
 - (일본) 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비중과 역할이 극히 미미한

2) 김용렬, 「社外理事制와 理事會 改革」, 산업연구원, 1999, pp. 10~21

수준임

-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자율적·선택적으로 발전해온 관행이라 할 수 있음
 -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사외이사를 법률적으로 의무화시키지는 않고 있음
 - 다만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상장 규정에서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요구하고 있음
 - 상장 신청시 우선적으로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해야 하며 상장 후 1년 이내에 1인을 추가해야 함

- (사외이사 성과 논쟁)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가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사외이사가 최고 경영자를 견제하고 부실 경영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직관적인 추론과 일부 사례³⁾도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 미국 내에서 사외이사의 비중과 권한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실증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이 역시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가 발표되고 있음⁴⁾
 - 가장 최근에는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외이사의 비중이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라는 연구 결과도 있음⁵⁾

3) 대표적인 예로,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경영이 기업 성과를 악화시켰다는 판단 아래 사외이사들 1992년에 최고 경영자를 사임시킨 GM을 들 수 있음. 동사는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역할 분담을 문화하기 위해 소위 「기업통치헌장」을 선포하기도 했음

4)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실증 분석들은 이대회, “사외이사의 역할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의 고찰: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商事法研究』 제16권 2호, 1997 참조

5) D.C. Hambrick and E.M. Jackson, "Outside Directors with a Stake: The Linchpin in Im Governan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000 Summer(본 권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며, 용은 저자의 홈페이지 www.gsb.columbia.edu/faculty/dhambrick/를 참조)

정책 제언

- (일률적인 제도 지양) 법제화를 통해 일률적인 사외이사 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기보다 일정한 기준만을 제시한 후 경영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는 미국의 ‘관행’을 국내에 법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사외이사 제도는 우리와는 다른 경영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관행화된 것이며,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기업의 운용 실태와 유용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강화·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불어 정부의 단일한(또는 통합된) 권고안만이 아니라 법률가 단체, 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권고안이 제시되어 국내 여건과 산업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사외이사 제도를 기업들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도 정착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사외이사의 비중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경영 참여 의욕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2000년 상반기에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이사회 결의 참석률이 54%로 높아졌으나,⁶⁾ 사외이사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이사회 기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이사회 기능과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정반석 연구위원 bsjoung@hri.co.kr ☎ 3669-4045)

6) 증권거래소, 「사외이사 경영참여 현황 분석」, 2000. 7